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1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4
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4
1.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4
1.1.2.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5
2.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9
2.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9
2.1.1.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9
2.2. 입찰방법 10
2.2.1. 입찰에 따른 계약 10
2.3. 입찰공고 11
2.3.1.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11
2.3.2.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12
2.4. 입찰참가 13
2.4.1.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13
2.4.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15
2.4.3. 입찰서 제출 16
2.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18
2.5.1.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18
3. 용역계약의 낙찰 21
3.1. 개찰 및 낙찰 21
3.1.1. 개찰 및 낙찰선언 21
3.2. 낙찰자 결정방법 21
3.2.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1
3.2.2. 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3
3.2.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25
4. 계약의 체결 28
4.1. 계약의 확정 28
4.1.1.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28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1.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다. 용역 분야)

종류	내용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학술용역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일반용역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함	

용역계약 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1.2.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포함)

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9.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11.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제외)에 따른 계약,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여야 함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2.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2.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2.1.1.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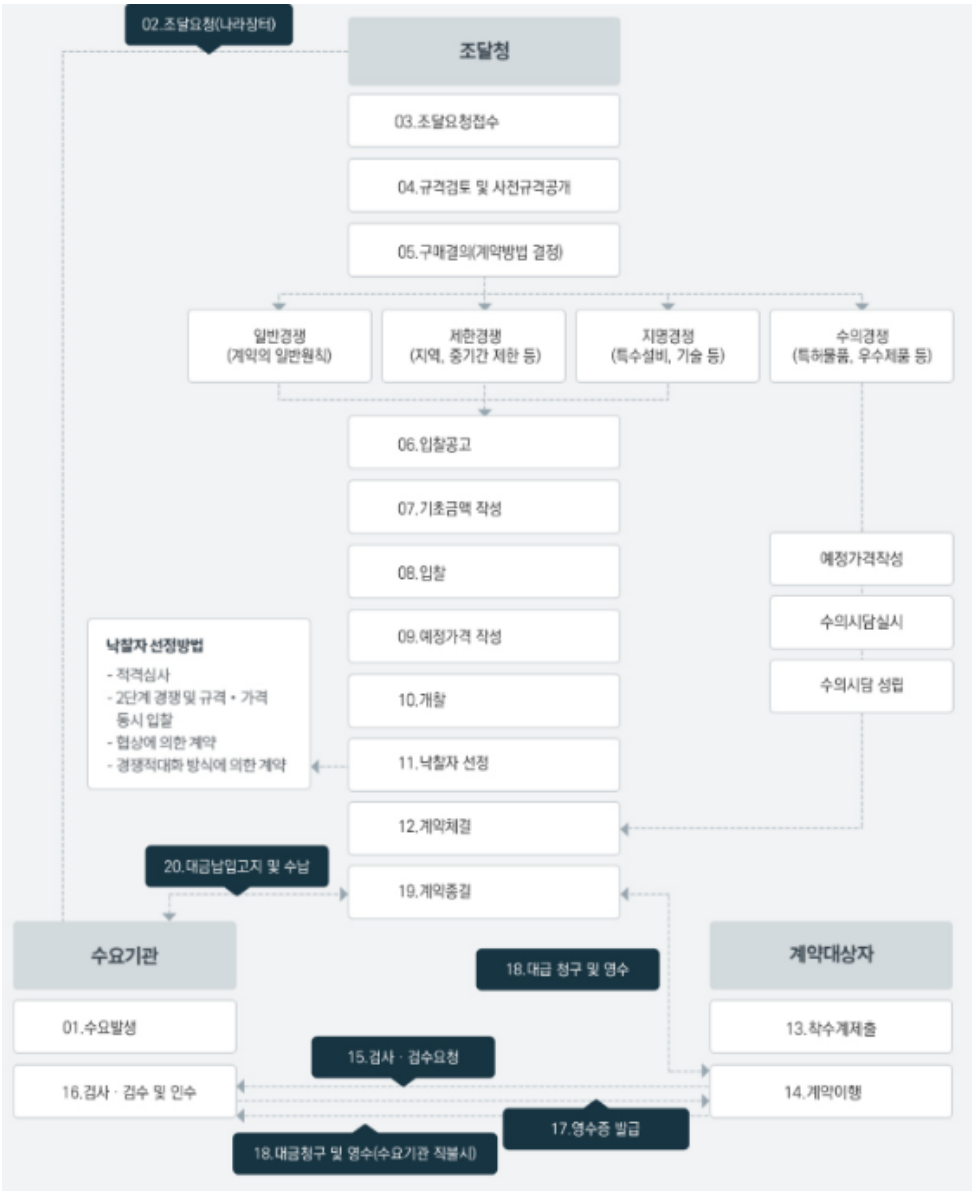
용역계약의 입찰 및 입찰절차도

용역계약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용역계약의 일반적 입찰절차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용역구매 — 일반용역 계약절차>

2.2. 입찰방법

2.2.1. 입찰에 따른 계약

일반입찰의 원칙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한입찰

제한입찰이 가능한 계약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제한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용역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역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 용역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용역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명입찰

지명입찰이 가능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이와 같이 용역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2.3. 입찰공고

2.3.1.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공고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공고의 시기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에는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2.3.2.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및 통지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입찰참가의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통지서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2.4. 입찰참가

2.4.1.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질의사례-계약법규-해석사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 **부정당업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록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2.4.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 참가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신청서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입찰 참가신청증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함)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입찰보증금 면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참조).

입찰보증금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Q. 입찰보증금의 경우도 보증기간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마.).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2.4.3. 입찰서 제출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전산처리 시 별지 제6호서식)］.

▪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기명날인

▪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8. 가.).

> ※ **입찰서 작성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9. 라.).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청렴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Q. 착오로 잘못 투찰한 경우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입찰자는 개찰일시 전까지 당해 입찰의 취소요청은 가능하나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낙찰금액의 5% 이상)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FAQ>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는 입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2.5.1.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사유

- 입찰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의 무효 이유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계약의 한 방법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재공고입찰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공고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3. 용역계약의 낙찰

3.1. 개찰 및 낙찰

3.1.1.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특례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
>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하는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3.2. 낙찰자 결정방법

3.2.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약 유형별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시·도지사가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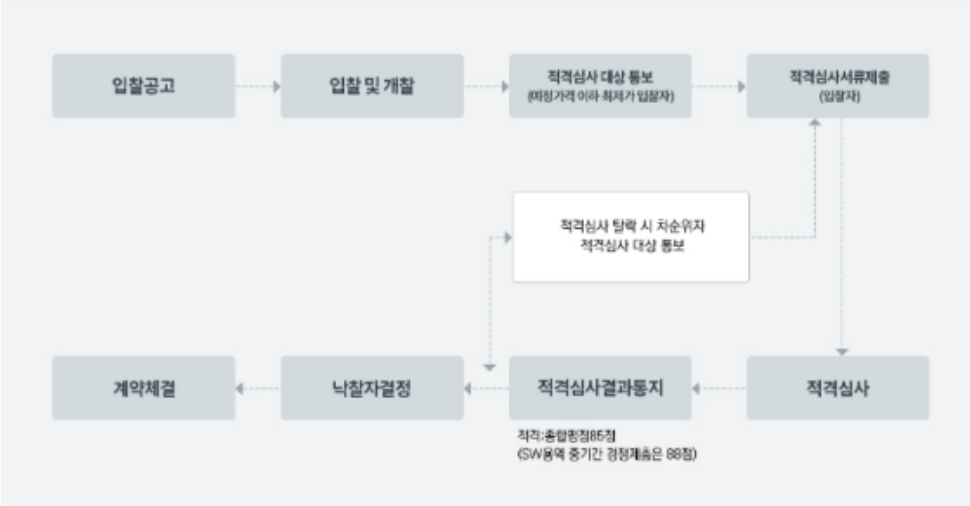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1.).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2.).

<적격심사>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낙찰자 선정방법>

재심사

재심사 절차

▪ 계약담당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8절 재심사).

-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2.2. 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단계 입찰

2단계 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위의 2단계 입찰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단계 입찰 절차도>



<출처: 조달청(www.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Q.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 A.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합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 경쟁은 규격적격자끼리 가격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출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FAQ>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기술·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담당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항).

Q. 방과 후 위탁업체 교육관련 입찰을 하는데요. 2단계 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최저가 투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로(낙찰율 90%, 88% 보장) 등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나요?

A.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낙찰율 88%, 90%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 -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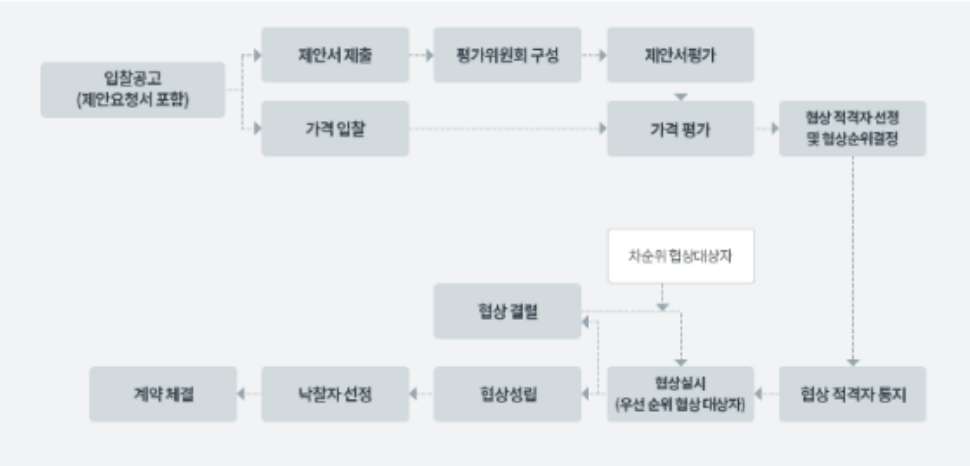
3.2.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도>



<출처: 조달청(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계약이행능력 심사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평가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2.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설계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용역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4. 계약의 체결

4.1. 계약의 확정

4.1.1.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계약의 체결 기한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1. 가.).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서 작성의 면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의 확정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